

대구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1205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9.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2018. 7. 2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24. 접수 제1644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8. 11. 7. 접수 제780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650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19,605,786원 및 그 중 113,151,741원에 대하여 201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7.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과 자녀인 E, F, 피고가 있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7.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8. 10. 24. 접수 제1644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8. 11. 7. 접수 제7805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C이 피고와 사이에 2018. 7.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행위는 C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7. 22.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 채무자가 그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19839 판결 등 참조).

먼저,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C이 피고와 사이에 2018. 7. 22.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공동상속인 중 C과 E은 상속포기 기간 내인 2018. 8. 14.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931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10. 16. 위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며, 그 후 D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와 F은 2018. 10. 22. D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민법 제1042조), 2018. 10. 22.에 이루어진 D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채무자인 C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연월일로 기재된 “2018. 7. 22.”은 D의 사망일인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F이 2018. 10. 22.자로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 수성구 G, H, I, J, K에 있는

L아파트 M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 수성구 G 대 44040.3㎡

2. 대구 수성구 H 대 16615.1㎡

3. 대구 수성구 I 대 25449.1㎡

4. 대구 수성구 J 대 65249.7㎡

5. 대구 수성구 K 대 4792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4층 N호, 철근콘크리트조 172.37㎡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2, 3, 4, 5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199282.7분의 72.6753

2. 세종특별자치시 O 전 2284㎡

단, 공유자 B 지분 2284분의 396. 끝.

